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!

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입니다.

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,

현행 조례에 따르면 ‘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
기본요금’의 경우 전액 감면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감면에 필요
한 일반회계 보전이 2008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의
재정적 부담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, 해당 수도요금 감면 조항
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.

또한, 현행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하나인 ‘천재지변 지역’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지역으로 변경하여 감면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나 감염병 등에 딸느 사회재난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천재지변 지경을 변경하고, 수도요금 감면 내용 중 ‘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’ 등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.

아무쪼록 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!!